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외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차세대 여권 도입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및 지난 20년 간의 여권발급 수수료 동결로 국고수입이 제조원가보다 낮은 적자구조가 지속됨에 따라, 여권발급수수료를 일괄 2천원 인상하여 여권발급수수료 현실화를 실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실시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(제39조 관련)

종 류	구 분		여권발급수수료		여권발급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
			국내	재외공관	
1. 전자여권	가. 복수여권	5년 초과 10년 이내	26면: 37,000원	26면: 37달러	26면: 8,140원
			58면: 40,000원	58면: 40달러	58면: 8,800원
		5년	26면: 32,000원	26면: 32달러	26면: 7,040원
			58면: 35,000원	58면: 35달러	58면: 7,700원
	나. 단수여권	5년 미만	17,000원	17달러	3,740원
2. 비전자여권	긴급여권	1년 이내	17,000원	17달러	3,740원
			50,000원	50달러	11,000원
3. 기타	가. 여행증명서		25,000원	25달러	5,500원
	나. 남은 유효기 간 부여 여권		27,000원	27달러	5,940원
	다. 기재사항 변경		5,000원	5달러	1,100원
	라. 여권 사실증명		1,000원	1달러	220원

비고

1. 위 표 제1호에서 “전자여권 “이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여 발급되는 여권을 말한다.
2. 위 표 제3호라목에서 “여권 사실증명 “이란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,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, 여권의 실효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증명을 말한다.
3. 위 표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긴급여권 발급 시 여행 목적이 발급지 국가 외에서 체류 중인 친족의 사망,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여권발급수수료 및 여권발급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을 적용한다.

여권발급수수료		여권발급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
국내	재외공관	
17,000원	17달러	3,740원

4. 위 표 제3호라목에도 불구하고 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여권 사실증명의 발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외교부 여권과	
연 락 처	(02) 2002 - 0133